

지침명 : 환경관리지침	개정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일 자
	04	안영인	안재찬	임종우	2008.08.18
	05	김준의	허철균	임종우	2009.08.31
	06	임한성	백선덕	임윤택	2017.05.24
	07	임한성	백선덕	임윤택	2019.01.29
	08	임한성	백선덕	임윤택	2020.01.30

목 차

1. 목 적	2
2. 신고 및 허가사항	2
2.1 대관 인·허가	2
2.2 법규별 업무·기록관리	6
2.3 벌칙	7
2.4 행정처분	10

1. 목 적

본 환경관리지침서는 건설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현장환경관리 업무기준을 확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원활한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신고 및 허가사항

2.1. 대관 인·허가

신고 종류		신 고 대 상	이행시기	관련법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신 고	- 건축물축조 : 연면적 1,000㎡ 이상(가설건물 축조 포함) - 굴정 :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토목 :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조경 : 면적합계 5,000㎡ 이상 - 건축물해체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도장공사 : 건물외부 도장공사 - 상기 공사에 준하는 기타공사 -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착공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칙 제58조
	변경신고	- 사업규모 증감 / 사업종류 추가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조치사항 변경 -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이사 변경 - 공사기간 연장	변경전 30일 이내 공사 종료일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신 고	-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배출(5톤미만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관급공사 발주자 명의 신고 : 100톤이상 위탁처리시)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 단, 5톤이내는 건설폐기물중 폐목재로 처리가능) - 현장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에 신고	착공전	건폐법 제17조
	변경신고	- 신고한 건설폐기물 총량 50% 이상 증가 -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 5톤이상 배출 - 폐기물 처리방법, 운반 및 위탁업체 등 처리계획 변경 - 공기 3개월 이상 연장 /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	폐기물 처리전	
	처리실적 보고	- 건설폐기물 신고 후 배출하는 모든 현장 (한국환경자원공사 / 전산입력 http://www.allbaro.or.kr)	매년 2월말 (준공후 15일 이내)	건폐법 제34조/규칙27조
	재활용 실적보고	- 건설폐기물 신고후 배출하는 모든 현장	준공검사전	건폐법 제40조/령17조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고	신고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적용제외 :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지정폐기물 등) - 정기부과 : 매년3월말, 수시부과 : 배출종료후 30일 이내 - 감면신청 : 해당 폐기물 관련 제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 이의신청 : 납부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스템 : WWW.budamgum.or.kr)	(정기부과) 매년 3월말	자원순환법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 고	-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내 특정공사해당장비 5일이상 사용 - 특정공사 해당장비(굴삭기 등 13종)	착공전	소음진동 규제법 제22조/규칙21조
	변경신고	-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 30%이상 증가 - 공사기간 연장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 - 공사규모 10%이상 확대	7일 이내	

신고 종류		신고 대상	이행시기	관련법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신고	- 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폐기물 배출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 단, 5톤이내는 건설폐기물중 폐목재로 처리가능)	착공전	폐관법 제17조2항 /규칙제18조
		- B/P 운영으로 100kg/일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개시일/폐기물 배출 1월이내	
	변경신고	- 종류별 월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 기준) 50%이상 증가 (공사폐기물의 경우 총량대비 50%이상 증가) -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300kg/일 이상 배출 (공사폐기물의 경우 5톤 이상) - 폐기물 처리방법, 운반 및 위탁업체 등 처리계획 변경 - 공사기간 3개월 이상 연장(사유발생 1월이내 신고)	폐기물 처리전	
	처리실적 보고	- 사업장폐기물 신고후 배출하는 모든 현장(관할 지자체)	매년2월말 (최종배출일 15일이내)	폐관법 제38조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신고	- 폐유 또는 폐유기용제를 월평균 50kg 이상,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 배출 - 페페인트, 페라카 등을 월평균 100kg, 합계 월평균 200kg 이상 배출 - 폐석면 월평균 20Kg 이상 배출	사업개시일 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전	폐관법 제17조3항, /규칙22조
	변경신고	- 월평균 배출량(최근 1년 기준) 10%이상 증가 - 새로운 지정폐기물 발생 - 종류별 처리방법, 처리업체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전	
	처리실적 보고	- 지정폐기물 신고후 배출하는 모든 현장(관할 지자체)	매년2월말 (최종배출일 15일이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허가	-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지하수 개발	개발전	지하수법 제7조
	변경허가	- 지하수 개발·이용용도 변경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사유발생후 7일이내	
	신고	- 양수능력 100톤/일 이하 지하수 개발	개발전	지하수법 제8조
	변경신고	- 신고인 명의변경 - 지하수 개발·이용용도 변경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 지하수 개발·이용 3월 이상 중지	사유발생후 7일이내	
	준공신고	-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를 준공하는 경우	준공후 1개월이내	지하수법 시행령14조
	종료신고	- 신고(허가) 취소 - 개발·이용기간 만료 - 굴착한 장소에 지하수 미채취 - 소요수량 미확보, 수질불량으로 개발·이용 불가능 - 개발·이용 종료 - 굴착행위 신고에 반영된 공사 종료	원상 복구전	지하수법 제9조의3/ 규칙9조의3
굴착행위 신고		- 지하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오염 관측정을 통한 수질측정, 굴착지름 75mm 이상인 지질조사 등의 토지 굴착	굴착전	지하수법 제9조의4

신고 종류		신고 대상	이행 시기	관련법규
오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설치 : 1일 오수 발생량 2m³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시 - 단독정화조 설치 : 1일 오수 발생량 2m³ 이하인 건물.시설 등을 설치시 2) 하수처리구역 안 : 수세식변기 설치시 정화조 설치할것 3)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지역(4대강 수계관리 관련법) - 오수처리시설 설치 : 수세식변기 시설 또는 1일 오수 발생량 1m³ 초과시	시설 설치전	하수도법 34조/ 령24조/ 규칙28조
	변경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시 - 시설규모 또는 처리용량 - 시설의 구조 또는 시설 본체의 교체	변경전	
	폐쇄신고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시	폐쇄전	
	준공검사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후	준공후	법37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재활용	설치전	건폐법 제27조/ 규칙16조,19조
	변경승인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변경 -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 처리용량 30% 이상 변경 - 주요설비 변경 - 상호 변경	변경전	
	사용개시 신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 예정	사용개시 10일전	건폐법 제28조/ 규칙20조
	폐쇄신고	-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종료 후 폐쇄 예정	폐쇄예정일 1월이전	폐관법 제50조/ 규칙69조
폐수배출 시설	신고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배출 시설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시설 - 금속광업시설과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 최대 폐수량이 0.1m³/hr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는 폐수 배출 시설 -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인 시설 - 금속광업시설 및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 최대 폐수량이 1m³/hr 이상	설치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칙38조1,2항
	변경신고	- 폐수 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 종 변경 - 폐수배출량 50%이상증가 -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 폐수처리방법 변경 -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 배출 및 방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변경전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임대하는 경우 - 폐수 위탁자 변경 - 허가 및 신고된 사항 변경 -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변경후 30일 이내	
	가동개시 신고	- 폐수배출시설 설치 후 사용 예정	사용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37조/ 규칙46조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 시설 규모별 적합한 환경기술인 임명	가동개시 신고시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47조/ 령59조/ 규칙63조
	환경기술인 개임신고	- 환경기술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신고 종류		신고 대상	이행시기	관련법규
대기배출 시설	신고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 용적 3m³이상의 혼합시설 또는 고체입자상 물질 계량시설 - 공통시설 : 용적 50m³이상 고체입자상 물질 저장시설, 동력 20마력이상 분쇄시설(습식, 이동식 제외), 용적 5m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 도장시설 등	설치전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 령11조/ 규칙25~27조
	변경신고	- 배출 및 방지시설 증설·교체 또는 폐쇄 - 배출시설 폐쇄 - 사용원료 또는 연료 변경 -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 변경 - 사업장 명칭 변경 / 대표자 변경 - 배출 및 방지시설 임대하는 경우	변경전 2개월이내 1개월이내	
	가동개시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 후 사용 예정	사용전	대기환경 보전법 제30조/ 규칙34조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 시설 규모별 적합한 환경기술인 임명	가동개시 신고시	대기환경 보전법 제40조/ 령39조/ 규칙53조
	환경기술인 개임신고	- 환경기술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	
환경영향 평가	관리책임 자 지정통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현장	착공전	환경영향 평가법 제35조
	착공통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예정	착공전	환경영향 평가법 제37조
	공사중지 통보	- 3월 이상 공사 중지시	중지전	
	준공통보	- 공사 준공시	준공시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항만, 도로, 수자원개발, 철도, 하천 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시	수질환경 보전법 제53조/ 령72~73조/ 규칙73~74조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	신고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소아세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질류(병커유, 아스팔트유), 클레오소오트유, 기계유, 실린더유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저장시설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취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토양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 토양오염물질-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인화합물, PCB, 시안화합물, 페놀류,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조(a)피렌, 다이옥신, 1,2-디클로에탄	설치전	토양환경 보전법 제12조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 - 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변경 : 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 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저장하는 오염물질 변경	사유발생 30일 이내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사유발생시	

2.2. 법규별 업무·기록관리

구 분	관 련 내 용	세 부 업 무 내 용	시 기
대 기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에 반영된 모든 시설 및 조치기준 준수(세륜기 설치, 방진덮개 설치 등) - 세륜시설 운영일지 작성(지자체 요청시)	착공전, 공사중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	대기배출시설 설치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 가동시간,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기록 - 오염물질 배출량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시설 운영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 실적보고	비상저감조치발령 후 30일 이내
폐기물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3자계약	폐기물 신고전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 폐기물 배출일별 발생량, 처리량 등 기록 - 폐기물 인계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폐기물 위탁/처리시 마다 작성(차량당 작성) - 청색, 분홍색 인계서 보관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이행실적 대장 작성	- 폐토사, 폐콘,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배출시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폐기물 분리보관소 설치	- 종류별 보관소 지정(폐콘크리트, 폐목재, 지정폐기물 등) - 분리보관 표지판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일지 작성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 -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작성	처리시설 운영시
	폐기물처분부담금	- 정기부과 : 매년3월31일까지 - 수시부과 : 배출 종료후 30일 이내 - 감면신청 : 해당 폐기물관련 제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매년 3월말까지
소음진동	방음벽 설치	- 3m 이상 방음벽 설치 - 공사 착공전에 설치	착공전
	소음 자체측정	- 등가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등가소음 측정 - 측정 위치, 측정값 등을 소음측정일지에 기록	공사중
	소음측정장비 관리	- 장비 검교정 실시 및 기록유지(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관리카드 등)	년1회
수 질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 - 오염물질 측정기기 부착(자가측정 의무규정 없음)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 가동시간, 폐수 배출량, 약품투입량 등을 기록	운영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 공사 개시전 까지 설치	공사 개시전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	- 관리담당자 지정 - 강우 전후 시설 정비 - 비점오염 방지시설 관리·운영대장 기록	운영중
오 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가 시공(단, 기성제품은 제외)	설치 신고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년1회 이상 내부청소 - 방류수 수질측정 가. 6개월 마다 1회 : 1일 처리용량 200m³ 이상과 처리대상 인원 2천명 이상인 정화조 나. 연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m³ 이상 200m³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운영중
지하수	이행보증금 예치	-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	지하수 개발후
	수질검사	- 양수량 30톤/일 이상 : 음용수 2년마다, 생활용수 3년마다	운영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공사중

2.3. 별 칙

위 반 내 용		별 칙
■ 대 기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세륜시설,방진막,방진덮개 등)		300만원 이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명령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배 출 시 설	설치허가 미이행	1억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 미가동	1억원 이하 벌금
	설치신고 미이행	3,000만원 이하 벌금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미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
	자가측정 미이행, 측정기록부 보관 미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설 고장상태로 방치	200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기록부 허위기재, 보관 미흡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 및 불법매립		7,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미이행		3,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3,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미이행		3,000만원 이하 벌금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회수·처리방법 미준수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3,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000만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배출 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2,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미이행		2,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미이행 및 거짓작성		1,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준해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무 사항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 위탁업체 처리 기준 및 능력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년간폐기물처리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배출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미입력		1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벌금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을 매립 시설의 사용종료신고 미이행자		1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고 미이행,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반 내 용		벌 칙
■ 소음 · 진동		
사용금지, 공사중지, 폐쇄 명령 위반		1,000만원 이하 벌금
작업시간 조정명령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 미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방음시설 미설치 상태로 공사시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수 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미이행	7,000만원 이하 벌금
	설치신고 미이행	5,0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비정상 가동	5,000만원 이하 벌금
	오염물질 측정기기 미부착(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제외)	1,000만원 이하 벌금
	운영기록부 허위작성, 보관 미흡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비점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1,0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명령 위반	1,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내 다량의 토사유출		1,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공사중지 명령 위반		5,000만원 이하 벌금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공사중지 명령 위반		2,000만원 이하 벌금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착공, 공사중지(3개월 이상), 준공 미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비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반 내 용	별 칙	
■ 오 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시설 미설치	1,000만원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벌금
단독정화조 부적정 운영 및 개선명령 불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설 설치를 무허가 설계·시공업자에게 위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준공검사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지·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폐쇄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미이행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상복구 불이행,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미흡	2,000만원 이하 벌금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위반	1,000만원 이하 벌금	
지하수 보전구역내 불법행위	3,000만원 이하 벌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폐쇄명령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굴착행위 신고 미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수질검사 미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준공신고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행보증금 예치 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질검사 결과 미비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토 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허위신고	1,000만원 이하 벌금	
토양오염 방지조치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토양오염 검사 미이행, 검사결과 미비치	200만원 이하 과태료	
토양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정보시스템에 미입력	200만원 이하 과태료	

2.4. 행정처분

◆ 대 기(시행규칙 별표 36)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미이행	제43조	경고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제43조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기준 부적합	제43조	개선명령	사용중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미이행	제43조	사용중지			
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가) 배출시설 설치가능 지역 (나) 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	제23조	사용중지 폐쇄명령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제23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방지시설 미설치/임의 철거	제2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방지시설 미가동/신선한 공기를 섞어 배출 또는 그러한 시설을 한 경우	제31조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제30조	경고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제36조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재·미보존	제31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20일
자가측정 규정 위반 (가) 자가측정 미이행, 자가측정 횟수 부적정 (나) 자가측정 허위기록, 기록부 미비치, 자가측정시 여과지 미보존	제32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10일
환경기술인 미임명	제40조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환경기술인 자격미달		변경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미이행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

◆ 수 질(시행규칙 별표 22)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초과 (가) 특별대책지역지역 외의 지역 (나) 특별대책지역내의 사업장	제39조 제40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20일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42조 제1호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제42조 제5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제42조 제7호	조업정지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20일	조업정지30일
변경신고없이 임의로 방지시설 변경한 경우	제42조	개선명령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20일	조업정지30일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제42조 제5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 - 설치제한지역 - 설치제한지역 외	제42조	조업정지3개월 조업정지10일	허가취소/폐쇄 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폐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또는 그러한 시설을 한자		조업정지3개월	허가취소/폐쇄		
기타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제42조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회색하여 배출한 자					
중대수질오염으로 취수중단 또는 사람, 가축 피해가 발생시		조업정지3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or 폐쇄명령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 기재·미보존	제42조 제5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20일
환경기술인 미임명	제42조 제5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환경기술인 자격미달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
환경기술인 비상근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운영기준 미준수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53조 제4항	저감시설 설치명령 저감시설 개선명령			

◆ 소 음

위반 행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 비 고

- 1)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이란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에 한한다.
- 3)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